

상 표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2025. 3.

특 허 청
(상표심사정책과)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대리인(대표자) 신고서 및 보정서(보완서) 내 대리인 명칭을 반드시 영문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기재요령을 삭제하여 출원인 편의 및 방식심사 효율을 증대하는 한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에 따라 하향된 수수료 가산기준을 상표등록출원서 기재요령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리인 영문성명 관련 기재요령 변경(안 별지서식 제1호, 제5호)

국제대리인과 무관한 본국관청 대리인 명칭을 영문으로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보정 사례를 줄이고 타 서식(의견서 등)과의 일관성 도모
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사항 반영(안 별지서식 제3호)

‘23.8.1.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 시 수수료 가산 기준을 지정상품 20개에서 10개로 하향함에 따라 이를 상표등록출원서에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9. 0.~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제 호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3호가목 중 “※ [지정된 변리사]란에는 대리인 신고 시 적은 영문 성명만을 적으며, 성과 이름 사이에 쉼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 [지정된 변리사]HONG Gil Dong, KANG Gam Chan” 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14호가목 중 “20개” 를 “10개”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4호가목 중 “※ [지정된 변리사]란에는 대리인 신고 시 적은 영문 성명만을 적으며, 성과 이름 사이에 쉼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 [지정된 변리사]HONG Gil Dong, KANG Gam Chan” 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해당사항 없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5981